

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후견인, 후견감독인,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사소송법이 개정(법률 제14961호, 2017. 10. 31. 공포, 2018. 5. 1. 시행)됨에 따라, 신설된 후견에 관한 관할변경 신청사건의 변경결정에 따른 즉시항고권자에 대한 고지 등의 대상과 기록송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은 신청인 외에 후견인,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,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함(안 제31조의2제1항 신설)
-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이

확정되면 바로 그 결정正本과 후견사무의 감독에 관한 소송기록
을 변경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함(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)

4.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별지와 같음

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1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)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 결정은 신청인 외에 후견인,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,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그 결정정본과 후견사무의 감독에 관한 소송기록을 변경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1조의2(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)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은 신청인 외에 후견인,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,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그 결정正本과 후견사무의 감독에 관한 소송기록을 변경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.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609